

고 발 장

피 고 발 인 성 명 : 조 ○○(*****-*****)

주 소 :

근 무 처 : 전 (주)대한항공 부사장

고 발 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협 의 건 명 항공보안법 위반

적 용 법 조 항 항공보안법 제23조

사건의 배경

2014.12.5(금), 14:53(현지시간: 00:53), 미국 뉴욕국제공항(이하 "JFK")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주)대한항공 항공기 086편(기종 A380, 407석)에서 발생한 "(주)대한항공 항공기 회항"과 관련하여 당시 항공기에는 피고발인(조○○ 전 (주)대한항공 부사장)을 포함하여 승객 247명과 조종사 4명 및 객실승무원 19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발인은 1등석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이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당 객실승무원은 물론 안전·보안·서비스 업무의 총괄 책임자인 사무장 등을 상대로 폭언 등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피고발인은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하였으며,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에 있던 항공기가 탑승구로 회항하여 이로 인해 JFK공항에서 승객 247명과 승무원 23명 등 총 270명이 탑승한 (주)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려다 13분 지연출발 하게 되었습니다.

조 사 경 위

국토교통부는 2014.12.8(월)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 “(주)대한항공 항공기 회항” 관련 사건을 인지하였고 「항공법」 제153조(항공안전 활동) 및 「항공보안법」 제33조(항공보안 감독)에 따라 지정된 항공안전감독관 및 항공보안감독관을 파견하여 즉시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하였습니다.

협 의 사 실

피고발인은 2011년부터 (주)대한항공 객실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2014년 1월부터는 (주)대한항공 총괄 부사장직을 맡아 기내서비스 업무를 총괄 담당하여 왔습니다.

피고발인은 뉴욕 방문 후, 귀국을 위해 사건 당일 (주)대한항공 086편 항공기 일등석에 탑승하게 되었으며 당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 출입문을 닫기 전에 항공기 안에서의 “승객의 협조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 안내방송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대한항공 086편에는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등과 같이 기타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Safety Information Card’를 제작하여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발인의 좌석에도 소란행위 등은 항공기 내에서 금지되고 있다는 동일한 ‘Safety Information Card’를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1등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이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 봉지를 개봉하지 않고 피고발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서비스관련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맞느냐며 승무원에게 “서비스 그렇게 하나?”며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 등을 하였고, 다시 사무장을 불러 매뉴얼 상 절차를 따지며 이에 당황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무장에게 “너~ 내려~”라는 등 고성을 지르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고성은 객실 2층 2등석 전방과 갤리(주방)로 분리된 1층의 이코노미석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피고발인은 2011년부터 (주)대한항공 객실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어 항공기 안에서 소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됨을 알 수 있었으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안내 방송과 비치된 'Safety Information Card' 등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항공기 내에서 고성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발인은 회사 부사장으로서 회사 내 인사 등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막강한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승무원과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하고 승무원과 사무장은 기세에 눌려 이의제기도 못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사무장은 기장을 통해 출발하던 항공기를 되돌리게 하고 항공기에서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부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무장 등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발인의 폭언 등과 지위를 이용한 업무방해행위로 항공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은 결국 항공기에서 내리게 되었으며, (주)대한항공 086편 항공기는 회항하여 지연 출발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저해됨은 물론 247명의 승객이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결 론

이와 같이 피고발인은 (주)대한항공 객실사업본부장 및 부사장으로서 기내에서의 승객의 협조 의무 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등을 범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